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24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 8. 27. 선고 2020가소371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6. 30.경 C에게 김해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7. 7. 7.경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피고에게 연체 차임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와 달리 계약조건을 월 차임 450,000원,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

1) 피고와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을 연체 차임과 잔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분배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상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등 참조).